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28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배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5. 20.
3. 회 부 일 : 2026. 5.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이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대상 기업 중 약정을 체결한 기업 비율은 66.2%에 불과하고, 2025년 실태조사에서는 54.3%로 오히려 10%p 이상 감소하고 있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이 미비한 실정임.

하도급대금 연동 체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3조의6).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게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 부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illegible]

□ 현행법 제3조의6제1항1)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현황(최근 3년)>

연도	기업명
2025	총 6개사 두산밥캣코리아(주), 볼보그룹코리아(주), 에이치엘만도(주), (주)포스코 퓨처엠, 삼성전기(주), 엘에스엠트론(주)
2024	총 8개사 롯데웰푸드(주), 에이치디현대건설기계(주), 에이치디현대삼호(주), 엘아이지넥스원(주), (주)LG생활건강, 엘지이노텍(주), LG전자(주), (주)풍산
2023	총 6개사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텔타테크, 이랜드월드

□ 시행령 제6조의6제2항과 제3항2)은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 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 1) 제3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의 선정·지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2) 제6조의6(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지원)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른 협약의 이행실적에 관한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3)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 제6조의6제2항과 제3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할 실익이 없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현행처럼 시행령에 해당 규정을 존속시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